

'94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(안)

검 토 보 고

1.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가. 제출일자 : 1994년 8월 30일

나. 회부일자 : 1994년 8월 30일

3. 제안이유

- '9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정조정위원회의 심의와 도의회의 의결을 얻어 확정된 바 있으나
- 주요사업의 추가시행과 국유재산관리계획승인등으로 공유재산의 취득 및 교환, 매각, 양여의 사유가 발생됨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여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하고자 도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임.

4. 주요골자

[재산의 취득]

- 여성회관이전부지(진입로)매입
 - . 청주시 지북동 150-2번지 (답) 188m²
 - . 청주시 지북동 149번지 (답) 652m²
- 증평광덕마을회관신축
 - . 괴산군 도안면 광덕리 347-1 82m²
 - . 괴산군 도안면 광덕리 340-2 132m²

[재산의 교환]

- 교환취득(경찰청재산)
 - . 청주시 대성동 56-1(지사공관부지) 3,121.30m²
 - . 청주시 복대동 632-1번지(진흥원부지) 230m²
 - . 충주시 용탄동 1093번지 354m²
 - . 충주시 용탄동 1099-19번지 (내수면개발시험장부지) 287m²
 - . 충주시 용탄동 1095번지 478m²
- 교환처분(도유재산)
 - . 청주시 지북동 355-33번지외 3필지(경찰정보안분실부지) 1,509m²
 - . 위 지상건물 1동 717.40m²
 - . 청주시 사직동 12-6번지(경찰청장 관사부지) 774m²

· 위 지상건물 1동	57m ²
· 청원군 미원면 쌍이리 산1번지 위지상건물 2동(항공대)	483.10m ²
· 청원군 양성면 용포리 479-26번지(양성지서부지)	185m ²

[보존부적합재산의 매각]

◦ 청주시 서문동 165-1번지(대지)	82.60m ²
◦ 청주시 서문동 166-37번지(도로)	23.10m ²
◦ 제천군 백운면 덕동리 28-6번지(대지)	132m ²

[청주고인쇄박물관재산양여]

◦ 청주시 운천동 521번지의외 6필지(전)	8,366m ²
◦ 청주시 운천동 산18-6외 5필지(임야)	7,007m ²
◦ 청주시 운천동 866번지 지상건물 3동	1,528.02m ²

5. 검토의견

'94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검토한바

이는 국유재산관리계획승인 및 주요사업추가시행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및 교환, 매각, 양여의 사유가 발생됨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경을 통한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위한것으로

가. 취득재산에 있어

- 여성회관 이전부지 매입은

청주시유지에 위치한 여성회관의 청사가 노후화되고 협소하여 주민

이용에 불편을 초래하는 실정으로 여성회관을 청주시 지북동 355-3 일원으로 이전신축하려는 것과 관련하여 850㎡의 진입로 부지를 매입코자 하려는 것이며

○ 증평광덕 마을회관 신축은

마을에서 무상으로 제공한 괴산군 도안면 광덕리 소재 1,155㎡의 부지에 마을 주민들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건물 214㎡ 규모(1억원)의 마을회관을 신축하여 문화공간 확충과 주민편익을 증진코자 하는 것입니다.

나. 교환재산에 있어서는

본격적인 지방화시대에 부응하여 국유재산관리계획에 계상된 국유지 4,470㎡(교환금액:1,660백만원)(공관, 농촌진흥원, 내수면개발시험장부지)와 도유지 3,725㎡(교환금액:1,695백만원)(경찰청장관사 및 경찰정보안분실, 항공대 건물, 중원군 양성지서부지)와 상호 교환하려는 것임.

다. 매각재산에 있어서는

위치와 형태가 건축부지로 부적합한 도유재산인 청주시 서문동 소재 대지 82.6㎡와 도로부지 23.1㎡에 대해 건물소유자에게 7천3백만원(평당 2,280천원)에 매각코자 하려는 것과

제천군 백운면 덕동리 소재의 도유지에 1960년도에 사유건물을 건축하여 거주하고 있는 건물소유자에게 132㎡의 대지에 대해 629천원(평당 16천원)에 매각코자하는 것으로

보존부적합한 재산을 매각 처분코자 하려는 것입니다.

라. 양여재산에 있어서는

지방행정기구 개편으로 도사업소인 청주고인쇄박물관이 '94. 8. 1. 청주시로 이관 되므로써 박물관이 사용하고 있는 부지 15,373㎡와 건물 158.02㎡의 도유재산을 청주시에 양여코자 하려는 것으로 이들의 취득, 교환, 매각, 양여 재산등에 대해서는 공유재산관리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변경계획안으로써 본 변경계획안은 승인하여 줌이 타당하다고 사료됨.

6. 첨 부

'94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